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67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요	4
다. 검토의견	5
라. 관계 기관 의견	8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6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20.
- (3) 회 부 일 : 2024. 8.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또한 현행법상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의 체계와 맞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되, 3년 이상 재직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 1명을 임원에 포함하고, 임원의 임명 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u>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제30조(임원) ① ----- ----- <u>이사 10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2명 2.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

현행	개정안
<u><신설></u> <u>②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상임이사·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u> <u>③ (생략)</u>	<u>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u> <u>3.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u> <u>② 임원의 임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u> <u>1.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 <u>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기금이사의 경우에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u> <u>3.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u> <u>③ (현행과 같음)</u>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요

□ 노동이사제란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를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왔음.¹⁾

□ 한편 제17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7466호)이 발의된 이후 제19대 국회(4건²⁾)와 제20대 국회(2건³⁾)에서도 유사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 제39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22. 1. 11.)에서 김경협의원(의안번호 제2101066호), 박주민의원(의안번호 제2102985호) 및 김주영의원(의안번호 제2105514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의안번호 제2114328호)이 의결되어 법률 제18795호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음('22. 8. 4.).

-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1)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부산·광주·대전·울산광역시, 경기도·경상남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용인·부천·양주·안산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음.

2) 박원석의원안(의안번호 제1904851호), 전순욱의원안(의안번호 제1904759호), 이언주의원안(의안번호 제1909229호) 및 김현미의원안(의안번호 제1917023호).

3) 이언주의원안(의안번호 제2002683호) 및 박광운의원안(의안번호 제200785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③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검토의견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가목4)에 따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노동이사 1인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함.

□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30조제1항5)은 공단에 비상임이사 9명을 두도록 하면서, 공단의 「정관」 제10조제2항6)에서는 비상임이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5) 「국민연금법」 제30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관」 제10조(임원)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용자대표로서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명
2. 근로자대표로서 노동조합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2명
3. 지역가입자대표로서 농어업인단체, 자영업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4.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 2명
5. 당연직이사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를 당연직이사(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1명과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현행 「국민연금법」과 공단의 「정관」에 따라서는 노동이사 1명을 추가로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는 것이 제한되는 상황임.

- 「국민연금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를 ‘각 1명 이상’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의 정원을 현행 ‘각 2명’에서 ‘각 1명’으로 축소함으로써 노동이사 정원을 확보할 수도 있으나,
- 이 경우에는 나머지 비상임이사 정원(3명)을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집단에 동수로 배정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단의 비상임이사 정원을 현행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되, 늘어난 정원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등 국민연금 관련 4대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성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0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절차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⁷⁾ 다른 법령에서 준정부기관 상임·비상임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②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의 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⁸⁾

준정부기관 상임·비상임이사의 추천 절차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할 경우에 이를 규정할 실익이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사’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의 ‘이사’는 ‘비상임이사’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관된 용어 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법」의 ‘이사’를 ‘비상임이사’로 수정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라.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노동이사 도입 근거 마련: 신중검토) 보건복지부는 노동이사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 제30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법률에 비상임이사의 구성(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수급자 대표 각 1인 이상)이 규정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역별 균형 있는 이사 구성이 필요한데, 노동이사제 도입 시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임원 임명 절차 정비: 수용) 보건복지부는 현재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임원 임명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안 제30조제2항의 개정제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10

참고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구분	「국민연금법」	공단 「정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기금이사 제외)	이사장 제청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이사장 임명	이사장 임명
기금이사	공단 추천위원회 심사 → 이사장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공단 추천위원회 심사 → 이사장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정하고 있지 않음)
이사 (당연직이사 제외)	이사장 제청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감사	이사장 제청 → 보건복지부장관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공단 추천위원회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